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2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이학영·강득구·정태호

이춘석 • 안호영 • 정준호

임호선 · 김재원 · 이정문

김교흥 • 한정애 • 이병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,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,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장관및 시·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는 대신 환경부장관에게만 제출하도록하는 등 의제처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음.

다만, 폐기물처리업자가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는 의제처리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음.

이에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적합성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제 처리규정을 적 용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성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(안 제25조제14항, 제15항, 제16항).

법률 제 호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허가 또는 변경허가를"을 "허가· 변경허가 또는 적합성확인을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25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

제25조제15항 중 "변경허가·변경신고"를 "변경허가·변경신고·적합성확인"으로, "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"을 "변경허가 신청, 변경신고 또는 적합성확인 신청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16항 중 "변경허가·적합성확인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아 혂 행 개 정 제25조(폐기물처리업) ① ~ ③ 제25조(폐기물처리업) ① ~ ③ (생략) (현행과 같음) 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 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 · 도지사 의 적합 통보ㆍ허가 또는 변경 ----- 허가·변경 허가를 받거나 시 · 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적합성확인을-----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4. 제25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확 인을 받은 경우 15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 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・도지 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 가・변경신고의 의제(擬制)를 <u>가 · 변경신고 · 적합성확인 ---</u>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 출,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,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변경허가 신청, 변경신고 또는

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16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 며, 적합통보·허가·변경허가 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·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.

① (생략)

적합성확인 신청을
16
변경허가
<u>• 적합성확인을</u>
<u>.</u>
① (현행과 같음)